

임금채권보장제도

● 사업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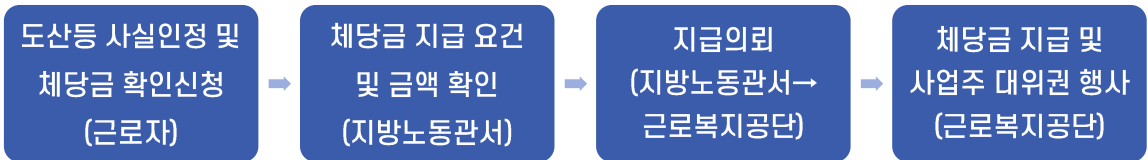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일반체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인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체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 아래 표 참고
	<소액체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소액체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 후휴가기간 중 급여(상한액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상한액 700만원) ※ 총 상한액(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1,000만원

* <일반체당금>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종류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사업추진체계

<일반 체당금>



<소액체당금>



●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